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임도의 설치 및 유지·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한 「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